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. 5. 12 선고 2021가단196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5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, 선정자 C, D, E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1. 4. 6. 접수 제79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1/4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권은석

선 정 자 명 단

1. A
2. C
3. D
4. E

별지1

부동산의 표시

제천시 F 답 1560㎡

별지2

청 구 원 인

1. 원고 선정당사자 A 과 선정자 C, D, E 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합니다.)의 소유자입니다.

2.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81. 4. 6.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집수 7936호 채무자 G 근저당자 B 채권최고액 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약 40년이 도과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.

3.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 선정당사자 A 과 원고선정자 C, D, E 는 피고로부터 청구 위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본 소에 이른 것입니다.

